





라부안의 세금 체계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 주 앞바다에 있는 남중국해 섬이다.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해외 금융 센터로도 알려져 있다.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내 연방 영토다. 하지만 라부안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데 고정세율 3%, 비거주자 원천징수면세, 비시민권자인 이사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면세 등이 있다.

라부안 기업에게는 외환관리 규제와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국 기업에게 라부안은 확장 전략을 위한 중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라부안섬 세금 체계 개관

1. 라부안의 위치?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 해안에서 18km 떨어져 있고 코타 키나발루(수도 사바)에서 171km 떨어져 있다. 인구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말레이시아의 연방 영토다.																						
2. 라부안 기업이란?	라부안 기업은 1990년 라부안 사업세법(Labuan Business Tax Act 1990)의 부칙(제2B절)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특정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는 라부안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라부안의 최소 직원 수와 연간 운영 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table> <tr> <th>라부안 기업</th><th>적용 가능 규정</th></tr> <tr> <td>Labuan company</td><td>Labuan Foundations Act 2010</td></tr> <tr> <td>Labuan foundation</td><td>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td></tr> <tr> <td>Labuan Islamic partnership</td><td>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td></tr> <tr> <td>Labuan limited partnership</td><td>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td></tr> <tr> <td>Labu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td><td>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td></tr> <tr> <td>Labuan Islamic trust</td><td>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td></tr> <tr> <td>Labuan trust</td><td>Labuan Trusts Act 1996</td></tr> <tr> <td>Malaysian Islamic bank licensee</td><td>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td></tr> <tr> <td>Malaysian bank licensee</td><td>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td></tr> <tr> <td>Labuan financial institutions</td><td>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ct 1996</td></tr> </table>	라부안 기업	적용 가능 규정	Labuan company	Labuan Foundations Act 2010	Labuan foundation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Islamic partnership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limited partnership	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	Labu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	Labuan Islamic trust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trust	Labuan Trusts Act 1996	Malaysian Islamic bank licensee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Malaysian bank licensee	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financial institutions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ct 1996
라부안 기업	적용 가능 규정																						
Labuan company	Labuan Foundations Act 2010																						
Labuan foundation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Islamic partnership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limited partnership	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																						
Labu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buan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10																						
Labuan Islamic trust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trust	Labuan Trusts Act 1996																						
Malaysian Islamic bank licensee	Labu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Malaysian bank licensee	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Labuan financial institutions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ct 1996																						
3. 라부안 사업 활동이란?	라부안 사업 활동이라는 뜻은 라부안 거래 활동나 비거래 활동이 라부안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라부안으로 부터 또는 라부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법률이라도 위반시 제외된다. 라부안 기업 중 라부안 사업 활동 (라부안 사업 활동 요건) 2018년 세제 규정 (이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정규직 직원 수 및 운영 지출액에 관한 최소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라부안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1967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당국에서 경우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4. 라부안 거래 활동과 비거래 활동	라부안 거래 활동 • Banking • Insurance • Trading • Management • Licensing • Shipping operations 또는 어떤 활동이라도 라부안 비거래 활동이 아닌 경우	라부안 비거래 활동 라부안 기업을 대신해서 라부안에 위치한 증권, 주식, 대출, 예금 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보유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
라부안 세금 제도		
1. 어떤 세금 제도를 적용하는지?	상세사항 라부안 비거래 활동 라부안 거래 활동 거래 활동과 비거래 활동을 함께 할때 - 라부안 거래 활동으로 간주함 비 라부안 비즈니스 활동 지적 재산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그 댓가로 로열티나 기타 수익을 받았을 경우 누구라도 라부안 내에서 적격한 전문가(법률, 회계, 재무, 비서 서비스) 서비스를 라부안에서 라부안 기업에게 제공할 때	세금 처리 비과세 대상 감사받은 순이익의 3% 감사받은 순이익의 3% 1967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24% 1967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24%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 받는 법정 수입의 65%를 면제받음
2. 라부안 조세 조약	일반적으로 라부안 기업은 말레이시아 네트워크인 70개 이상의 DTA 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칠레, 독일, 인도, 이도네이사, 일본, 룩셈부르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세이셸 공화국, 영국의 DTA 에서는 제외 됐다.	
3. 라부안 기업과 거래하는 거주자	거주자가 라부안 회사에 다음과 같은 지급을 했을 경우 1967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이자지급 - 33% 허용 불가 2. 임대차 - 33% 허용 불가 3. 기타 지급액 - 97% 허용 불가	

4. 개인	라부안 세무상 거주자 개인에 해당하고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 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소득을 세무상 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경우 면제 받는다. 세무상 거주자일 경우 세율은 0%~28%, 비거주자 개인일 경우 단일세율 28%를 적용한다. 아래 세금 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거주자 개인에게 평가년도2020년까지 제공한다.
납세자	면제 사항
적격한 전문가 서비스를 라부안에서 제공할 때 (법률, 회계, 재무, 비서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 받는 법정 수입의 65%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을 라부안 내의 라부안 기업, 또는 공동 사무실, 마케팅 사무소에서 관리 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우	고용으로 인한 총소득의 50%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이 라부안 기업에서 이사 (director) 직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입한 이사 수수료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중 라부안 내의 라부안 기업에 취업해 주거수당과 지역수당을 받는 경우	수취한 주거 수당과 라부안 지역 수당의 50%
5. 양도소득세	라부안 기업이 라부안 거래 활동과 비거래 활동을 모두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순이익의 일부로 반영하며 3%의 세금을 부과한다.
6. 원천징수세	1967년 소득세법 제4조(f) 항에 따라 지적 재산권, 이자금, 기술료, 관리비, 기타 이익 및 소득을 라부안 기업이 세무상 비거주자나 또 다른 라부안 기업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세가 면제 되므로 원천징수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7. 간접세	용역세	판매세
	일반적으로 용역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정한 과세 대상 용역과 수입 용역에 6% 세율을 부과한다. 규정한 과세 대상 용역은 2018년 용역 세규에서 명시하고 있다. 용역세는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은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부담한다. 용역세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서비스는 그룹 및 기업 보험, 생명의료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중개 및 인수 서비스,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 관리 서비스 및 정보 기술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라부안은 용역세 예외 지정 구역으로 구분해 왔다. 현재는 랑카위, 티오만도 지정 구역이 됐고 팡코르 섬은 지정구역 후보지로 올라왔다. 지정 구역 내 또는 지정 구역 간에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용역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정 구역에서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용역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을 제공하거나 지정 구역 내로 용역을 들여오는 경우는 용역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한 규정한 과세 대상 물품이나 수입 물품에 5%, 10%, 또는 특정 세율로 부과한다. 판매세는 환급받을 수 없고 기업 비용이 된다. 그러나 라부안은 판매세 예외 지정 구역으로 구분해 왔다. 현재 랑카위, 티오만도 지정 구역이 됐고 팡코르 섬은 지정 구역 후보지로 올라왔다. 지정 구역에서 제조한 물품 (석유 제외)에는 판매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구역에서 수입하고 (해외 또는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 다른 지정 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나 지정 구역에서 다른 특별 구역 (특별 관세 지정 구역, 판매세와 관세를 양해 받음) 으로 운송하는 경우 판매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인지세	다음과 같은 인증서의 경우 인지세 면제 • 라부안사업과 관련해 라부안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금융상품 • 라부안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모든 문서, 관계 법령, 헌장, 규칙, 법령, 협력, 파트너십 계약서 또는 기타 인증서, 사업의 기능, 영업 권한,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나 그 이상의 문서 • 라부안 기업의 지분 이전 관련 모든 금융 상품	

연락처



Chee Pei Pei

상무

Executive Director

+603 7610 8862

pechee@deloitte.com



Lily Park

부장

Associate Director

+603 7610 8595

li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affili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provide services in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East Timor,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Guam, Indonesia, Japan, Laos, Malaysia, Mongolia, Myanmar, New Zealand, Palau, Papua New Guinea, Singapore, Thailand, The Marshall Islands,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 Hong Kong SAR and Macau SA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each of these, operations are conduct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 Malaysia

In Malay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ax Services Sdn Bhd and its affiliates.

Disclaimer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